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황명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1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황명선의원안) ..	2
--	---

I. 개요

1.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61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황명선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8. 7.
- (3) 회 부 일 : 2024. 8.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데, 가맹점 등록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황명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액감면(제8조의5 신설) ○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 ○ 감면액: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황명선의원안 2024. 8. 7. 발의(의안번호 2610)

☐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제정되었음.

동 법률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판매 등이 가능함.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별가맹점’과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환전대행가맹점’으로 구분되는데, 지

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¹⁾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2024년 5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90개임.

지역사랑상품권은 ①국비지원을 받아 발행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과 ②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데, 총발행규모는 2022년 27.2조원까지 증가한 이후, 2023년에 20.9조원으로 감소하였음. 지자체 자체 발행 규모는 2022년 8.8조원까지 증가하고 2023년에 7.2조원으로 감소하였음.

[최근 7년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규모	100억원	884억원	6,689억원	1조2,522억원	7,000억원	3,522억원
발행지원 규모	1,000억원	2.3조원	9.6조원	20.2조원	18.4조원	13.7조원
지자체 자체 발행 규모	264억원	0.9조원	3.7조원	3.4조원	8.8조원	7.2조원
총 발행 규모	1,264억원	3.2조원	13.3조원	23.6조원	27.2조원	20.9조원

주 1) 발행지원 규모: 국비 지원을 받아 발행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2) 총 발행 규모: 발행지원 규모 + 지자체 자체 발행 규모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음.

2021년 한국소비자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시 겪은 불편함의 정도와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상에서 지역 상권 내 가맹점이 어디인지 정보를 얻기 어려움’ 항목이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온라인 앱 상에서 지역 가맹점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움’이 2순위, ‘지역 내 이용하고 싶은 업종의 가맹점 수가 적어 번거로움’이 3순위로 나타나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가맹점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²⁾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초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경우, 미도입에 비해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2.28%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발행 상품권의 공급액 비율이 1%p 증가할 때 4.96%의 추가적인 매출액 증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³⁾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기업 입장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유입을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에게 가맹점 등록을 할 유인이 이미 존

2)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대부분은 지속적인 이용 의향 보여」(2021. 6. 17.)

3) 한국행정연구원,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2023. 1.

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의 실질적 유인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세와 국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존재할 수 있어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가맹점 등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가맹점 등록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연 매출 기준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을 개정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권고하였음.⁴⁾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연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반면, 일부 지자체들은 30억원 이상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을 유지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55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2023. 2